

---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 ]

2021.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목 차

|                               |    |
|-------------------------------|----|
| 제 1 장 사업의 개요 .....            | 1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3  |
| 1.2 사업의 개요 .....              | 3  |
|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 4  |
| 1.4 사업의 내용 .....              | 5  |
|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7  |
| 2.1 행정계획의 대상지역 .....          | 9  |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9  |
| 제 3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 11 |
|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 13 |
| 3.2 평가항목의 설정 .....            | 14 |
|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 18 |
| 3.4 환경현황 조사계획 .....           | 20 |
| 제 4 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 21 |
|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25 |
|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 .....    | 27 |
|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27 |
|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등 .....  | 29 |
|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 31 |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31 |

# 제1장 사 업 의 개 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사업의 개요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1.4 사업의 내용



#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낙동강 하류(낙동강 하류~금호강 합류점) 및 신반천 등 지방하천 2개소는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 낙동강 하류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사업의 개요

### 1.2.1 계획의 추진 근거

- 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 <표 1.2-1> 사업의 규모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
| 제25조(하천기본계획)<br>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br>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br>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br>3. 제방·댐·저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br>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br>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br>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br>가.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에 배분에 관한 사항<br>나. 계획홍수량<br>다. 계획홍수위<br>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br>마. 하도(河道)와 유황(流黃)의 개선<br>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br>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br>8의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br>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별표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됨

〈표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개발기본계획)

| 구 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

##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1.3.1 추진경위

- 2018.06.21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착수
- 2018.09.19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1.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21.10.08.~10.2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 1.3.2 향후 계획

- 2022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23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1.4 사업의 내용

가. 명 칭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나. 사업의 종류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다. 위 치 : 국가하천 1개소(낙동강 하류), 지방하천 2개소(신반천, 유곡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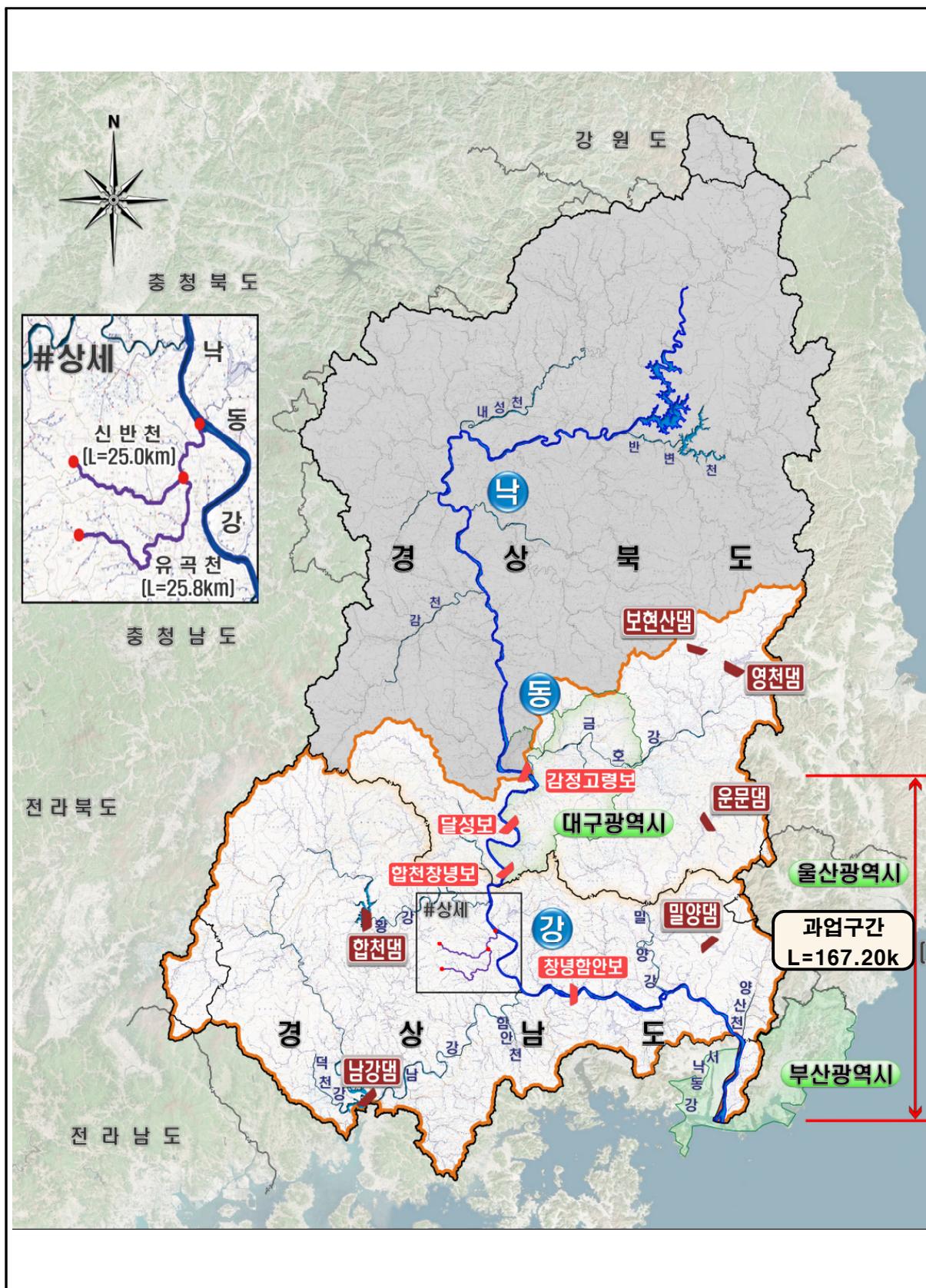
라.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바.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사. 사업의 내용

| 구 분 | 하천명 | 하천<br>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km) |        |       |
|-----|-----|----------|--------------------------|------------------------------|----------|--------|-------|
|     |     |          |                          |                              | 계        | 기수립    | 미수립   |
| 1   | 낙동강 | 국가하천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br>금호강 합류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br>낙동강 하구둑 외곽선 | 167.20   | 167.20 | -     |
| 2   | 신반천 | 지방하천     | 경남 합천 대양 백암              | 경남 의령 낙서<br>낙동강(국가) 합류점      | 25.00    | 20.20  | 4.80  |
| 3   | 유곡천 | 지방하천     | 경남 의령 공유 벽계              | 경남 의령 부림<br>신반천(지방) 합류점      | 25.80    | 10.61  | 15.19 |
| 계   |     |          |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                              | 218.00   | 198.01 | 19.99 |



(그림 1.4-1) 과업구간 위치도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행정계획의 대상지역**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1 행정계획의 대상지역

- 본 행정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 이용, 보전, 개발, 수질보전, 치수 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며, 행정계획의 대상지역은 총 218.00km(낙동강 167.20km, 신반천 25.00km, 유곡천 25.80km)으로 설정하였음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지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하천정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에 따른 검토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 행정계획명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 ▶ 하천등급 : 국가하천(낙동강 167.20km), 지방하천(신반천 25.00km, 유곡천 25.80km)
-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위치
  - 낙동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금호강 합류점~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낙동강 하구둑 외곽선
  - 신반천 : 경남 합천 대양 백암~경남 의령 낙서 낙동강(국가) 합류점
  - 유곡천 : 경남 의령 공유 벽계~경남 의령 부림 신반천(지방) 합류점
- ▶ 검토항목별 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설정

| 구분     | 대기질, 소음·진동 | 하천수질 및 저질 | 동·식물상   | 토양      | 기타   |
|--------|------------|-----------|---------|---------|------|
| 직접영향범위 | 하천구간       | 하천구간      | 하천구간    | 하천구간    | 하천구간 |
| 간접영향범위 | 300m 이내    | 하천유역      | 300m 이내 | 300m 이내 | 하천구간 |

〈표 2.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항 목                | 구 분 | 검토대상지역      |              | 주요 영향예측범위   |
|--------------------|-----|-------------|--------------|---|
|                    |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
| 기 상                |     | 대구기상대       | 2009~2020    |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 분석  |
| 지형·지질              |     | 계획지구        | 공사단계         | ○ 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 등에 기초한 변화정도 및 처리대책 수립                                 |
| 동·식물상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공사단계<br>운영단계 |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및 자연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 수리·수문              |     | 계획지구 및 인근하천 | 운영단계         | ○ 홍수량 산정에 따른 개수구간 및 규모 설정   |
| 토지이용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운영단계         | ○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
| 토 양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공사단계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및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 대 기 질<br>및<br>온실가스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공사단계         | ○ 공사구간 공사장비 가동 및 공사 차량 운행, 각종 토공사 등에 따른 주변 영향권역에서의 대기질 농도변화의 정량적 예측 |
| 소음·진동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공사단계         | ○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상지역   |
| 하천수질 및 저질          |     | 계획지구 및 인근하천 | 공사단계         | ○ 공사중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 공사단계         | ○ 공사시 폐유,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지역                                       |
| 위락·경관              |     | 계획지구        | 운영단계         |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3.2 평가항목의 설정
-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3.4 환경현황 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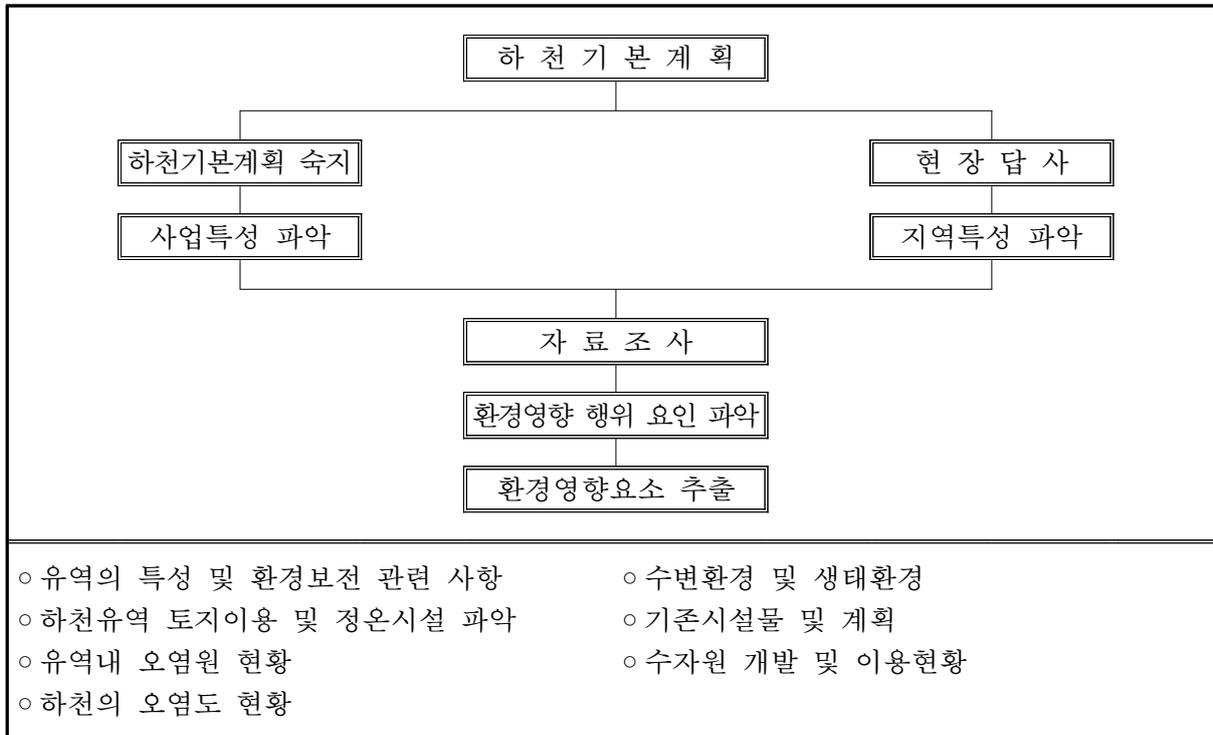


##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평가항목과 환경요소간의 관계표를 통해 환경적인 영향정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선정(제외)사유를 도출함
- 따라서,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 지역적 특성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파악한 후,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의 장·단기적인 환경요인을 포함하여 과업구간 주변 인접 영향권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설정함

###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항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다음의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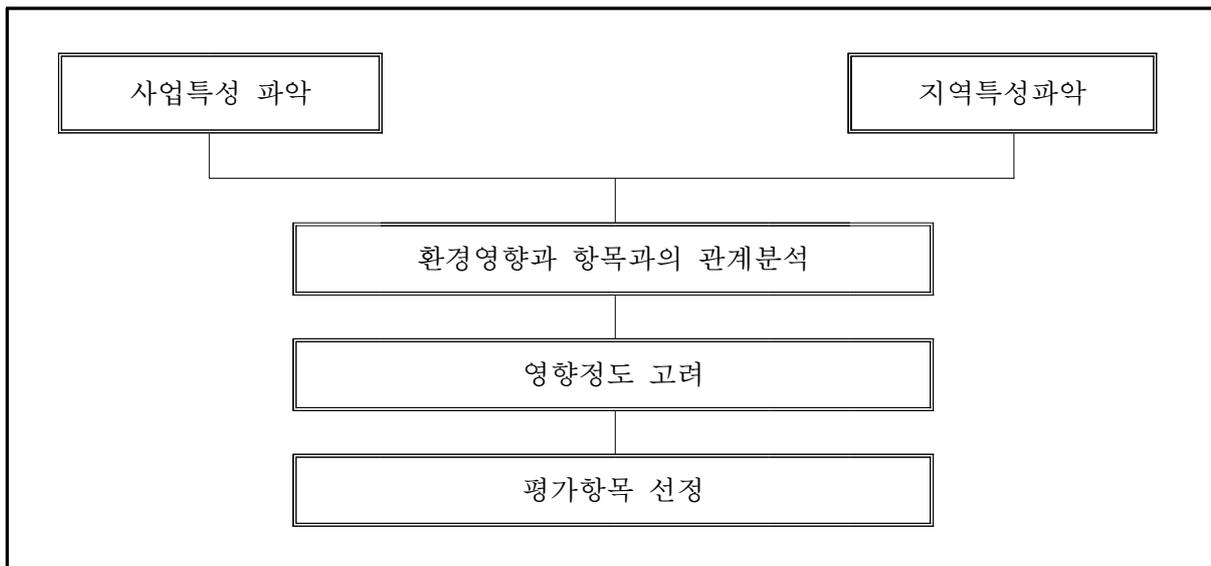
〈표 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구분   | 환경영향요소        | 세부내용   |
|------|---------------|--|
| 공사단계 | 토 목 공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생태계 및 주변 초본식생 훼손</li> <li>○ 토량이동(절·성토, 하도정비)</li> <li>○ 하천지형의 변경</li> <li>○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li> </ul> |
|      | 인 력 및 장 비 투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인부의 투입</li> <li>○ 공사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오탁수, 소음·진동증가</li> <li>○ 폐유, 폐기물 발생</li> </ul>                          |
| 운영단계 | 인 공 구 조 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환경 정비</li> </ul>  |

### 3.2 평가항목의 설정

#### 3.2.1 예측평가 항목설정의 흐름도

- 본 사업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9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개 항목을 일반항목으로, 나머지 7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미포함)하였음



(그림 3.2.1-1) 평가항목 선정과정

〈표 3.2.1-1〉 중점평가항목

| 구 분                  |                       | 선 정 사 유  | 평 가 사 항  |
|----------------------|-----------------------|--|--|
| 자연환경<br>의 보전         | 생물다양성·<br>서식지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li> <li>○ 동·식물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li> <li>○ 식물상 및 식생보전등급·생태자연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li> <li>○ 동·식물 서식지 차단 또는 훼손 여부</li> <li>○ 식생현황조사 및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li> </ul>  |
|                      | 지형 및<br>생태축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li> <li>○ 토사유출 및 사면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li> <li>○ 특이 지형·지질 조사</li> <li>○ 절·성토 범위 및 적정 계획고 검토</li> <li>○ 표토 및 비옥토의 유실방지 및 활용방안</li> </ul>                               |
|                      | 주변<br>자연경관에<br>미치는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를 토대로 경관요소를 파악하여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설정</li> </ul>   |
|                      | 수환경의<br>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접수계의 오탉가중 예상</li> <li>○ 공사시 지형변화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예상</li> <li>○ 공사시 오수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접하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li> <li>○ 공사시 지형변화에 따른 수계변화 및 홍수유출량 산정</li> <li>○ 침사지 설치에 따른 토사유출량 변화 산정</li> <li>○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오수량 예측</li> </ul> |
| 생활환경<br>의<br>안정성     | 대기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에 의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장비가동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예측 및 대책수립</li> </ul>   |
|                      |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및 저감대책</li> </ul>   |
|                      | 토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유류유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오염방지계획</li> </ul>  |
|                      | 자원·에너지<br>순환의<br>중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li> <li>○ 계획지구 인근 주민 및 이용객에 의해 생활폐기물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발생폐기물량 예측 및 처리 대책 수립(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등)</li> </ul>  |
| 사회·경제<br>환경과의<br>조화성 | 환경친화적<br>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녹지</li> </ul>   |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앞서 제시한 중점평가항목 이외의 항목 중 타항목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일반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상 영향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미포함)하였음

**<표 3.2.1-2> 중점평가 제외 항목**

| 구 분      |           | 선 정 사 유  | 평 가 사 항  |
|----------|-----------|--|--|
| 일반항목     | 기상        | ○ 대기질, 수질 등 타항목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 ○ 계획지구의 기상여건을 대표할 수 있는 기상관측소의 과거 10년간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
|          | 자연환경자산    | ○ 야생생물보호구역 분포여부 조사<br>○ 주요보호구역 분포여부 조사<br>○ 범정보호동·식물 및 자연환경 조사 | ○ 자료 및 현지조사<br>○ 계획시행시 영향 분석·검토                      |
| 평가 미포함항목 | 악취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 온실가스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실가스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 해양환경      | ○ 계획인구 인근지역은 해양환경과 관련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 전파장해      | ○ 계획시행으로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 일조장해      | ○ 계획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일조장해의 영향은 미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 인구·주거·산업  | ○ 계획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주거·산업의 영향은 미미함                              | -  |
|          | 위생 및 공중보건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위생 및 공중보건의 영향은 미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 3.2.2 환경영향요소와 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의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 평가항목과의 상호관련성과 영향 정도를 행렬대조표로 작성함

〈표 3.2-2-1〉 중점평가 제외 항목

| 환경요소<br>환경항목 |           | 공 사 단 계         |        |               |         |                |         |         | 운 영 단 계 |      |
|--------------|-----------|-----------------|--------|---------------|---------|----------------|---------|---------|---------|------|
|              |           | 토 목 공 사         |        |               |         | 인 력 및 장 비 투 입  |         |         |         |      |
|              |           | 수생태계 교란/수변식생 훼손 | 지장물 제거 | 절·성도에 의한 토랑이동 | 하천지형 변형 |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증가 | 공사인부 투입 | 공사장비 투입 | 폐유발생    | 하천정비 |
| 대기 환경        | 기 상       |                 |        |               |         |                |         |         |         |      |
|              | 대 기 질     |                 |        | □             |         |                |         |         | △       |      |
| 수환경          | 수 질       | △               |        |               | □       | □              |         |         | △       | ■    |
|              | 수리·수문     |                 |        |               | ●       |                |         |         |         | ●    |
| 토지 환경        | 토지 이용     |                 |        |               |         |                |         |         |         | ●    |
|              | 토 양       |                 |        |               |         |                |         |         | △       |      |
|              | 지형·지질     |                 |        |               | △       |                |         |         |         | ■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               |        |               | △       | ○              | △       | △       |         | ■    |
|              | 자연환경자산    |                 |        |               | △       |                |         |         |         | ■    |
| 생활 환경        | 친환경적 자연순환 |                 | △      |               |         |                | △       |         | △       |      |
|              | 소음·진동     |                 | △      |               |         |                |         |         | △       |      |
|              | 위락·경관     |                 |        |               | △       |                |         |         |         | ■    |
| 사회경제환경       | 인구·주거     |                 |        |               |         |                |         | △       |         |      |

※ 범 례

|                     |                    |
|---------------------|--------------------|
| ● 개발되면 상당히 좋음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함     |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임     | □ 악영향이 다소 있음(보통정도) |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가 작음 | ○ 악영향이 큼           |

###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기본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를 설정함

〈표 3.3-1〉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평가범위

| 구 분                   |                     | 선 정 사 유                               | 평 가 범 위   |  |
|-----------------------|---------------------|---------------------------------------|---|--|
| 자연환경의<br>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br>보전     | 동식물상<br>자연환경자산                        | ○수생 및 수변식물 식생변화 예상<br>○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 예상<br>○자연환경자산 변화 예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br>○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지형 및 생태축의<br>보전     | 지형·지질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지형 변화 예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 ○하천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 경관자원 분포 및 경관변화 등의 영향 예상                 | ○계획하천구간 및 경관자원 분포지역                          |
|                       | 수환경의<br>보전          | 수질                                    | ○계획수립에 따른 수계 영향<br>○하천유역별 오염부하량 검토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수계                             |
|                       |                     | 수리·수문                                 |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치수계획                        | ○계획하천 구간 및 유역                                |
| 생활환경의<br>안정성          | 환경기준<br>부합성         | 기상 및 대기질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영향 및 기초자료로 활용<br>○하천정비시 대기질 변화영향 예상          |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간 자료<br>○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500m) |
|                       |                     | 토양                                    | ○하천정비시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 영향 예상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
|                       |                     | 소음·진동                                 |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예상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500m)                       |
|                       | 환경기초시설의<br>적정성      | ○계획수립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연계처리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  |
|                       | 자원에너지<br>순환의<br>효율성 | 친환경적<br>자원순환                          | ○계획수립에 따른 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
| 온실가스                  |                     | ○계획시행시 공사장비 가동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증가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  |
| 사회·경제환경<br>경과의<br>조화성 | 환경친화적<br>토지이용       | 토지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변화 예상                                    |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지역                              |

〈표 3.3-2〉 항목별 조사·예측 기법

| 평가항목 \ 구분       | 현 황 조 사 |                            | 영 향 예 측 방 법  |
|-----------------|---------|----------------------------|--|
| 기상              | 조사내용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현황        | ○ 계획지구와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분석·정리   |
|                 | 조사방법    |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
| 대기질             | 조사내용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 ○ 대기질 현황측정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 수행<br>○ AERMOD모형을 이용한 대기질 영향예측·분석     |
|                 | 조사방법    |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
| 수환경의 보전         | 조사내용    |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조사·분석       |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br>○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br>○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  |
|                 | 조사방법    | ○ 주변 수계를 고려한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조사내용    |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
|                 | 조사방법    |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병행            |  |
| 지형 및 생태축보전      | 조사내용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형·지질현상        |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br>○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사면 안정성 검토 등                          |
|                 | 조사방법    |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조사내용    | ○ 동·식물상 현황 및 서식현황          |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및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  |
|                 | 조사방법    |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
| 자연환경자산          | 조사내용    |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조사          |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                 | 조사방법    |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
| 토양              | 조사내용    |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영향 파악 | ○ 계획지구의 토양오염현황 파악<br>○ 공사시 장비 및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예측                               |
|                 | 조사방법    |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중요성  | 조사내용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 계획지구에서 발생될 각종 폐기물 및 분뇨의 발생량 예측   |
|                 | 조사방법    | ○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원단위 조사     |  |
| 소음·진동           | 조사내용    | ○ 주요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현황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br>○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br>○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조사방법    | ○ 현지조사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조사내용    | ○ 경관우수지역 및 훼손예상지역 현황       | ○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
|                 | 조사방법    |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 선정 후 현지조사  |  |

### 3.4 환경현황 조사계획

#### 3.4.1 조사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한 환경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동·식물상 항목은 총 2회 계절별 조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음

〈표 3.4.1-1〉 환경현황 조사계획

| 구분         | 조사시기         |           |
|------------|--------------|-----------|
|            | 1차           | 2차        |
| 하천수질, 하천저질 | 2021년 상반기    | 2022년 상반기 |
| 육상 동·식물상   | 2021년 10~11월 | 2022년 상반기 |

#### 3.4.2 세부조사계획

-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지점은 항목별로 하천수질, 하천저질, 동·식물상 항목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조사계획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음

〈표 3.4.2-1〉 환경현황조사 세부조사 계획

| 구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횟수 | 비고                 |
|-----------|--|-------------------------|------|--------------------|
| 하천수질      | ○ pH, BOD, COD, DO, SS, TOC, T-N, T-P, Cd, CN, Hg, As, 유기인, Pb, Cr <sup>6+</sup> ,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은, 유량,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총 31개 항목) | 73개지점<br>(3km 당<br>1지점) | 2회   | 수질오염<br>공정<br>시험기준 |
| 하천저질      | ○ COD, T-N, T-P, Cd, Pb, As, Ni, Hg, Cr+6,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등 (총 13개 항목)   |                         |      |                    |
| 동·<br>식물상 | ○ 육상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br>○ 육수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어획대상 동물 등  | 사업지구<br>주변<br>0.5km이내   | 2회   |                    |

## 제4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제4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금회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2의2 제64조」에 따른 약식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표 4-1> 약식평가 검토

|   |   |  |
|---|---|--|
| <p>[법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p>[시행령 제10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p> <p>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p>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li> <li>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li> </ol> <p>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p> |   |  |
|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br/>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p> <p>2. 개발기본계획</p>   |   |  |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나. 도로의 건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

-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임

###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금회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결정내용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승인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 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임

〈표 5.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비 고     |
|-------------|--|---------|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
| 주 관 행 정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 관 계 행 정 기 관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밀양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 11개 지자체 |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계획**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관 행정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게시하며, 동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재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은 2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로 설정하였고, 공람장소는 지자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토록 하며, 주민설명회 장소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토록 하겠음

**<표 5.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 구 분   | 주 민 의 견 수 렴 계 획  | 비 고 |
|-------|--|-----|
| 초안공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안공람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공고 :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li> <li>- 정보통신망게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li> </ul> </li> <li>○ 주민공람기간 : 20일~60일(공휴일 제외)</li> <li>○ 공람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li> </ul> </li> </ul> |     |
| 주민설명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공람공고에 포함하여 공고</li> <li>○ 설명회 일시 : 신문공고 시작후 7일 이후</li> <li>○ 설명회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li> </ul> </li> </ul>  |     |

# 제6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등

6.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6.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등

###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계획수립기관, 협의기관, 민간전문가, 지자체,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하였음

| 구분 | 소속                         | 심의위원 | 비고               |
|----|----------------------------|------|------------------|
| 1  | 위원장<br>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김○○  | 계획수립기관           |
| 2  | 위 원<br>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김○○  | 계획수립기관           |
| 3  | 위 원<br>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박○○  | 협의기관             |
| 4  | 위 원<br>KEI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 박○○  | 협의기관 추천<br>민간전문가 |
| 5  | 위 원<br>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박○○  | 관할 지자체           |
| 6  | 위 원<br>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박○○  | 관할 지자체           |
| 7  | 위 원<br>부산광역시 시의회           | 최○○  | 주민대표             |
| 8  | 위 원<br>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 장○○  | 주민대표             |
| 9  | 위 원<br>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 박○○  | 시민단체             |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기간 : 2021.10.08.(금). ~ 2021.10.22.(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 의견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부</p>   </div> <p>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br/>(경유)</p> <p>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회신[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hr/> <p>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3579('21.10.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p> <p>2. 귀 기관에서 서면심의 요청한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p> <p>붙임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심의의견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낙동강유역환경청</p> </div> <hr/> <p>주무관 손원우 주무관 김명연 과장 전길 2021. 10. 12. 박상철</p> <p>협조자</p> <p>시행 환경평가과-7107 접수 하천계획과-3601 (2021. 10. 12.)</p> <p>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http://me.go.kr/ndg</p> <p>전화번호 055-211-1648 팩스번호 055-211-1606 / wonwoo81@me.go.kr / 비공개(5)</p>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 &lt; 사 업 개 요 &gt;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규모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167.2km)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금호강 합류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낙동강 하구둑 외곽선)</li> <li>- 신반천(25.0km)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 경남 의령군 낙서면(낙동강 합류점)</li> <li>- 유곡천(25.8km) : 경남 의령군 공유면 벽계리 ~ 경남 의령군 부림면(신반천 합류점)</li> </ul> </li> <li>○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li> <li>○ 계획수립기관 /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li> </ul> </div> <p><b>□ 종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낙동강 하류 및 지방하천 2개소(신반천, 유곡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고려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 심의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li> <li>○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하천의 현황사진(드론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li> <li>-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li> </ul> </li> </u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li> </ul> <p><b>2. 토지이용 구상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한 보전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낙동강하구), 생태자연도 1·2등급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정수장, 별도관리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지역(일용도습지, 엄궁습지, 삼락습지, 신덕습지, 화산습지, 감노습지, 도요습지, 오산습지, 송진늪, 박진교습지, 월평습지, 적포습지, 구곡습지, 박석진습지, 달성습지) 등</li> </ul> </li> </ul> </li> <li>○ 기존 인공시설물에 대한 치수적·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한 존치·개설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철거하거나 자연 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li> <li>- 유로 변경시 변경 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li> </ul> </li> </ul> <p><b>3.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li> </ul> </li> <li>○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li> </ul> </li> </ul> <p><b>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p>가. 항목별 심의의견</p>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시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제시</li> <li>※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풍수해종합정비계획 등</li> </ul> </li> <li>○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횡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li> <li>-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범정부호중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li> <li>-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조사 시 5년 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li> <li>※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 내륙습지 조사,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조사 등</li> <li>- 하천 준설, 골재채취 등 하천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은 풍수해 정비종합계획 등 치수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 고려</li> <li>- 계획하천별 생태적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적 영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하천별로 구성하여 제출</li> </ul> </li> <li>○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li> <li>- 하천 제방 및 호안 증축의 경우 매년 높아지는 홍수위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방축조 공사 시 자연생태계 영향도 유발되므로 친환경적 수해 위험 저감방안으로써 하천 주변의 나지 등의 홍수터를 매입하여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li> <li>- 사업시행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li> <li>-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li> <li>- 계획평면도 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li> </ul> </li> </u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 계획을 지양하고,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 리구역 지정, 친변지류지 등 홍수터 조성)을 우선 검토</li> </ul> </li> <li>○ <b>환경기준 부합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등 인근의 정온시설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걱정 저감방안 마련</li> </ul> </li> <li>○ <b>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자연도 평가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수구역 신규 지정은 신중히 검토</li> </ul> </li> <li>- 지장물 철거과정 또는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토양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제시</li> <li>-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 처리방안 등 제시</li> </ul> </li> </ul> <p><b>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 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 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li> </ul> <p><b>&lt;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 본부, '20.2)」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li> </ul> </li> <li>-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 이나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SNS,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li> </u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기간 및 시간을 분산하여 대면 설명회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된 기간(날짜 분산) 또는 시간(예, 10시~12시, 13시~15시, 15시~17시)과 충분한 개별 공간(독립공간 또는 충분히 이격된 책상 배치 등)에서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방문자에게 설명</li> </ul> </li> <li>- 설명회 개최 기간 또는 시간을 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 및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li> </ul> <p><b>6. 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계획에 반영(신설, 제거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li> <li>○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li> <li>○ 동 심의의견의 반영결과 및 해당 쪽수를 표로 제시하여야 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1. 10.</p> <p style="text-align: right;">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span style="background-color: gray; color: gray;">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b></p>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p><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p> </div>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낙동강 하류(낙동강 하류 ~ 금호강 합류점) 및 신반천 등 2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계획연장 총 92.5km)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li> <li>○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li> <li>○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li> <li>○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li> <li>○ 국가하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2개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천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획하천의 자연생태현황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li> </ul> </li> </o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p>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역의 보전과 복원계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계획하천이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li> <li>○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li>○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li> <li>○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li> <li>○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li> <li>○ 토시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li> </ul> <p>6.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1.10.27.</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span style="background-color: #cccccc; 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height: 20px;"></span> (인)</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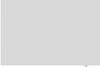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h3>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h3> <p>[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지침 “환경영향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2011, 환경부)”을 참고하여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p><b>【대안의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 및 수환경보전을 위하여 최대한 원형보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훼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li> </ul> <p><b>【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li> <li>○ 하천의 도심구간은 주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폐수처리계획 검토 및 반영 필요함</li> <li>○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li> </ul> <p><b>【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역 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인 경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건설자재) 의무 구매 준수 대상임</li> <li>○ 사업 추진시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측하지 못한 민원 발생시에는 민원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1. 10.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p> </div>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박 ○ ○</p> | <p style="text-align: center;">가스산업의 율령픽! 「2022 대구세계가스총회」 (‘22. 5. 23.- 27.)</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h2 style="margin: 0;">대 구 광 역 시</h2>  </div> <p>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br/>(경유)<br/>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의견 제출</p> <hr/> <p>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3579(2021. 10. 7.)호와 관련하여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준비서 심의(서면심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1. 심의 의견서(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1부. 끝.<br/>2. 대구수달보호기법 1부.</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대 구 광 역 시 장</p> </div> <hr/>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25%;">주무관</td> <td style="width: 25%;">배윤경</td> <td style="width: 25%;">자연생태팀장</td> <td style="width: 25%;">박광택</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환경정책과장</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전길 2021. 10. 21.</td> </tr> <tr> <td>협조자</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권숙영</td> <td></td> </tr> <tr> <td>시행</td> <td>환경정책과-15367</td> <td>(2021. 10. 21.)</td> <td>접수</td> <td>하천계획과-3750</td> <td>(2021. 10. 21.)</td> </tr> <tr> <td>우</td> <td colspan="3">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http://www.daegu.go.kr</td> </tr> <tr> <td>전화번호</td> <td>053-803-4211</td> <td>팩스번호</td> <td>053-803-4179</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yk0831@korea.kr / 비공개(5)</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증상시검사받기/마스크쓰기/손씻기/두팔간격건강거리두기/매일2번이상환기/집회모임회식자제/마음은가까이</p> | 주무관             | 배윤경          | 자연생태팀장                     | 박광택              | 환경정책과장 | 전길 2021. 10. 21. | 협조자 |  |  |  | 권숙영 |  | 시행 | 환경정책과-15367 | (2021. 10. 21.) | 접수 | 하천계획과-3750 | (2021. 10. 21.) | 우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  | / http://www.daegu.go.kr |  | 전화번호 | 053-803-4211 | 팩스번호 | 053-803-4179 | / yk0831@korea.kr / 비공개(5) |  |
| 주무관          | 배윤경   | 자연생태팀장          | 박광택          | 환경정책과장                     | 전길 2021. 10.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조자          |   |                 |              | 권숙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환경정책과-15367   | (2021. 10. 21.) | 접수           | 하천계획과-3750                 | (2021. 10.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              | / http://www.daegu.g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053-803-4211  | 팩스번호            | 053-803-4179 | / yk0831@korea.kr / 비공개(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박 ○ ○</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낙동강 하류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어야 함</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자연환경(생물서식공간, 산림, 하천 등)과 생활환경(주거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li> </ul> </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가능한 대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li> </ul> </li> <li>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서 작성시 우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와 수달 행동생태 및 보호전략 연구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li> </ul> </li> <li>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li> </ul> </li> <li>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약식평가 불가</li> </ul> </li> <li>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 정정 필요(총 9개소 → 4개소)</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21. 10.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 </p> </div>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최 ○ ○</p> |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완전 이관이 임박해 있는 현 시점에서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함.</li> <li>○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 4쪽에는 “마. 위치 및 사업계획”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는 기점과 종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자료가 전무함. 따라서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내용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두 가지 모두의 사유 모두 문제가 있음.</li> <li>○ 낙동강 하류는 천연기념물인 문화재보호구역이며, 법정보호종이 밀도 높게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임. 그런데도 생태계 전문가 및 낙동강하구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제외된 것은 부적절한 심의위원 구성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법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회를 전면 재구성하여야 함.</li> </u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최 ○ ○</p>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금회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교량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수 시설을 존폐하고자 하는 것인지, 친수공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가 필수적임.</li> </ul>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환경보전방안의 대안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li> <li>○ 환경보전방안의 대안을 생각하려면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중요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가능함.</li> </ul> <p>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li> <li>○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항목, 현황조사 위치, 현황조사 시기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한 중요 내용의 제시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함</li> </ul>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li> </ul>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최 ○ ○</p> | <p>어 주민의견수렴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p> <p>○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만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대상 주민을 알 수 있고,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심의가 가능함.</p> <p>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p> <p>○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p> <p>○ 중요한 사업내용을 알아야만 약식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함.</p> <p>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p> <p>○ 평가준비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p> <p>2021. 10. 28.</p> <p>심의위원  (인) </p>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견  |
|--------------|--|
| <p>장 ○ ○</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2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하천 내 및 주변 유역에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정비 시 계획 구간 외의 구간에도 수질영향이 크므로 공사 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수질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적정하게 수립하였음.</li> </ul> </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의 비교검토가 적정하게 검토되었음.</li> </ul> </li> <li>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이 반영되었으므로 타당함.</li> </ul> </li> <li>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사항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li> </ul> </li> <li>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의견없음</li> </ul> </li> <li>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의견없음</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21. 10.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span style="background-color: gray; color: gray;">                    </span> (인) </p> </div> |

| 심의위원         | 심 의 의 건   |
|--------------|---|
| <p>박 ○ ○</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2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br/>(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부지임에도 하천공간으로 편입시키지 못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천공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마련</li> <li>○ 하천공간내 사유지 보상이 지연됨에 따른 영향 평가</li> </ul> </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li> <li>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li> </ul> </li> <li>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li> <li>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철 수질이 COD 기준으로 6급수까지 악화되는 현상에 대한 평가(수돗물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li> </ul> </li> <li>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21. 10. 25.</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박 창 근 <span style="background-color: gray; 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15px;"></span> (인)</p> </div> |